

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4.28., 개정 2022.02.18. 개정 2024.03.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각 호와 같다.

- ① 입후보자의 자격(피선거권)심사
- ② 선거일시 결정공고
- ③ 선거인 명부작성
- ④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
- 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
- ⑥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
- ⑦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 심사
- ⑧ 재선거 여부결정. 단, 입후보 등록시 득표 미달과 제소시에 한함.
- ⑨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18., 2024.03.01.>
- ② 위원은 학생팀장을 포함하여 총(부)학생회장 및 대의원(부)의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생팀 직원이 한다.<개정 2020.04.28.>
- ③ 이 위원회는 선거개시 1개월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임기)

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후보자등록)

총(부)학생회장, 대의원(부)의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총(부)학생회장, 대의원(부)의장 후보는 런닝메이트제로 한다.

-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각1매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22.02.18.>
- ② 지도교수 및 계열(학과)장의 추천서 각1매
- ③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매
- ④ 서약서 각 1매

- ⑤ 투표참관인 명단 1매 (대의원(부)의장 후보자는 해당 없음)
- ⑥ 개표참관인 명단 1매 (대의원(부)의장 후보자는 해당 없음)
- ⑦ 소견서 (10분 이내) 1부
- ⑧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
- ⑨ 각종 개인 정보공개 동의서(범죄경력, 학점, 학기 등)<신설 2013.10.7.>

제6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7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02.18.>
- ② 간사는 학생상담 담당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10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.

부 칙(2019.05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